국 세 청				
(전화번호)				
분 3	류 기 호 :			년 월 일
	수 신 :		발 신	: 국세청장 [인]
제 목 :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				
국세기본법 제84조제 3 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2제 4항의 규정에				
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(□ 지급)결정을 통지합니다.				
① 단체의				
3 1	명칭			
신 청	② 대표자		のスロヒヲ出え	
· 성 인	성 명		③주민등록번호	
L'	④ 주소	(전화)		
			(전위)	
⑤	사 업 명			
6	신청소요경비	원	원	원
		_	_	
7	교부금지급			
	여부결정일자			
8	교부금지급			
		원	원	원
	결 정 금 액			
9	교부금			
	지 급 조 건			
10	교 부 금			
	지급제외사유			
11)	기 타 사 항			
4.1/	× 1 -1 · 1 · 0			

2207-464A

 $210\text{mm} \times 297\text{mm}$

82. 1. 27 승인

(신문용지 54g/m²)